

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한다.)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_____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한다.) 제58조_____</p>	<p>제9조(물품매입 요구의 심사) ①_____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한다.) 제58조_____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.</p>